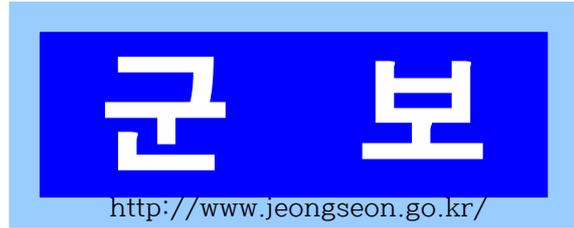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31호 2017. 11. 27. (월)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592호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 3
- 정선군 조례 제2593호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 정선군 조례 제2594호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9
- 정선군 조례 제2595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 정선군 조례 제2596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 정선군 조례 제2597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 정선군 조례 제2598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정선군 조례 제2599호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32
- 정선군 조례 제2600호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정선군 조례 제2601호 정선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39
- 정선군 조례 제2602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44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91호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 48
- 정선군 규칙 제1292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55
- 정선군 규칙 제1293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5
- 정선군 규칙 제1294호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87

조 례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92호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

정선군민제안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선군민제안조례」 및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등 군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으로 각각 운영하여 온 제안 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93호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를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 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 를 “조례·규칙 및 예산등의 공포절차” 로 한다.

제2조 중 “조례, 규칙등” 을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규칙 등”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3조제2항 중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로, “얻은 뜻을 기재하고” 를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로, “그” 를 “직인을 찍고 그” 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뜻을 기재하고” 를 “사실을 적고” 로, “일자” 를 “날짜” 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쳐서 공포한다” 를 “붙여서 공포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규칙별” 을 “조례·규칙별”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정선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 방법 등) 조례·규칙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제8조의 제목 “(공포일등)” 을 “(공포일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규

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을 “조례·규칙 등의 공포일과 고시일”로, “규칙등을”을 “규칙 등을”로, “발행된날”을 “발행된 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규칙 등”을 “조례·규칙등”으로, “20일”을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u>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전문) <u>조례, 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u></p> <p>제3조(조례)①<u>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뜻을 기재하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u></p>	<p><u>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조례·규칙 및 예산등의 공포절차</u>----- ----- -----.</p> <p>제2조(전문) <u>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u>-----.</p> <p>제3조(조례) ① <u>조례의 전문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u></p>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부쳐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번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
직인을 찍고 그 -----.

제4조(규칙)

----- 사실을
적고

날짜--. 다만, 그 규칙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은 것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번호) ①

붙여서 공포한다.

② -----

조례·규칙별-----
-----.

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정선군의회
조례·규칙 공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p><u>표시를 하여야 한다.</u></p> <p><u>제7조(공포방법) 조례,</u> <u>규칙등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u> <u>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u> <u>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u></p> <p><u>제8조(공포일등) ①조례,</u> <u>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u> <u>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u> <u>군보나 신문이 발행된날 또는</u> <u>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u></p> <p><u>②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u> <u>부과와 직접 관련되는</u> <u>조례규칙등은 긴급히</u> <u>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u> <u>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u> <u>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u> <u>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u> <u>한다.</u></p>	<p><u>제7조(공포 방법 등) 조례·규칙</u> <u>등은 「지방자치법</u> <u>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u></p> <p><u>제8조(공포일 등) ①조례·규칙</u> <u>등의 공포일과 고시일-----</u> <u>규칙 등을 -----</u> <u>발행된 날</u> <u>-----.</u></p> <p>②</p> <p><u>-----</u> <u>-----</u> <u>조례·규칙등-----</u> <u>-----</u> <u>-----</u> <u>30일-----</u> <u>-----.</u></p>
--	---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및 주민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시행유 예기간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공포절차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제명변경: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정선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2.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
 -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공포기관에 따른 공포방법 정비
(제3조, 제6조, 제7조)
- 3. 주민 권리제한 및 의무 부과에 따른 시행유예기간 상위 법령과 일치
 - 20일→30일(제8조)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94호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자치법규”를 “자치법규안”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법예고”를 “예고”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제출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4.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5. 예고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정선군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조제2항 중 “관보·도보·신문·방송 또는 컴퓨터통신에”를 “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과”를 “법제업무담당 소관부서장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 선군자치법규(정선군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u></p> <p>제2조(정의) <u>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u></p>	<p><u>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삭 제></u></p>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
다.

2.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
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는 경
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구하는 것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
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정선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는 이 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안-----

-----.

제4조(입법예고 대상) -----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 이라한다) 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입법안을 --. -- 각
호의 어느 하나 예고-----
-----.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
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
을 요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기타 군민의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5조(입법예고문)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 2. 입법취지
- 3. 주요내용
-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생략)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군보 발간일부 터 5일이내에 입법예고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 ① -----
----- 각 호-----
-----.

-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 2. 제출의견 접수기관
- 3. 의견제출 기간
- 4.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5. 예고내용의 전문(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예고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와 정선군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기간이 만료되어 입법예고 사항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릴수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 게시관에 게시하는 방
법에 의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관보
·도보·신문·방송 또는 컴퓨
터통신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 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
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② ----- 신문·
방송 또는 소속기관 게시관에
입법예고문을 -----
-----.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
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

----- 법제업무담당 소관부
서장과 -----.

제9조(공청회)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른다. -----

-----.

개정이유

상위법령 위임사실을 명시하고 법제처 협업과제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상위 법령 일치로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제명변경
 - 정선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2. 상위 법령 위임사항 명시(제1조)
- 3.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사항
 - 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정의 규정 삭제(제2조)
 - 나. 상위 법령 일치를 위한 입법예고 대상 및 예외사항 정비 (제4조 ~ 제5조)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95호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 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3명 이상 5명 이하” 를 “4명으” 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결산개요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결산서의 첨부 서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선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p>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의 정수)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u>3명 이상 5명 이하</u>로 한다. 이 경우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p> <p>① <u>위원의 결산에 관하여</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p> <p><u><신 설></u></p> <p>1. (생 략)</p> <p>2. <u>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u></p> <p>3. <u>채권 및 채무의 결산</u></p> <p>4. <u>재산 및 기금의 결산</u></p> <p><u><신 설></u></p> <p>5. (생 략)</p> <p>② <u>삭 제</u></p>	<p>----- ----- -.</p> <p>제2조(위원의 정수) ----- ----- ---- <u>4명으</u>-----.</p> <p>----- -----.</p> <p>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p> <p>① ----- -----.</p> <p>1. <u>결산개요</u></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u><삭 제></u></p> <p>3. <u>재무제표</u></p> <p>4. <u>성과보고서</u></p> <p>5. <u>결산서의 첨부 서류</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	--

제안이유

1.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2017년 정부 규제개혁 제도개선 과제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주요내용

1. 상위법령 관련조항 개정(제1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를 “제83조 및 제84조” 로 개정
2.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확정(제2조)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를 "4명으로" 개정
3.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정비(제7조 제1항)
 - 각 호의 내용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하는 내용 추가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96호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양육비등 지원은 지원기준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 관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군의회 의장이” 를 “정선군의회에서”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출생신고” 를 “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둘째” 를 “첫째·둘째”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 ① <u>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기준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u></p> <p>② ~ ④ (생략)</p> <p><신 설></p>	<p>제4조(지원요건 및 대상) ① <u>양육비 등 지원은 지원기준일 현재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 관내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에 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부 또는 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u></p>
<p>제6조(운영위원회) ①~③ (생략)</p> <p>④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4. (생략)</p> <p>5. <u>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u></p> <p>6. (생략)</p> <p>⑤~⑧ (생략)</p>	<p>제6조(운영위원회) ①~③ (생략)</p> <p>④- - - - -</p> <p>- - - - -</p> <p>- - - - -</p> <p>- - - - -</p> <p>1. ~4. (생략)</p> <p>5. <u>정선군의회에서</u> - - - - -</p> <p>6. (생략)</p> <p>⑤~⑧ (생략)</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u>통할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 - - - - - - - - - <u>총괄한다</u>.</p> <p>② ~ ③ (생략)</p>
<p>제9조(지원신청·사실조사) ① 양육비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군민은 지원대상 자녀의 <u>출생신고</u>와 동시에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p>	<p>제9조(지원신청·사실조사) ① - - - - - - - - - - - - - - - - - <u>출생신고 또는 전입신고</u> - - - - -.</p>
<p>제12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 ① 지원기간은 <u>둘째</u> 자녀는 출생신고일부터 1년, 셋째 자녀 이상은 지원기준일부터 만 12세 까지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군 관내를 떠나 주소지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그 때부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p>	<p>제12조(지원기간 및 자격상실) ① - - - - <u>첫째·둘째</u>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제안이유

둘째아 이상부터 지급되는 양육비를 첫째아 부터로 확대 적용하여 사회 적인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양육비 지급에 관한 자격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양육비 지급의 효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양육비 지원요건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세대로 하되, 지원대상자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함. (제4조제1항)
- 2.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형제·자매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제5항)
- 3. 현재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하여 지원하던 양육비를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12조제1항)
- 4.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 부터로 함. (부칙)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97호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의2”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2. “영” 제26조의4 제8호의 사업이란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2항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4호가목,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의3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4. “이차보전”이란 <u>금융기관</u> 대출 금리 중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제3조----- -----. 3. (현행과 같음) 4. ----- <u>금융회사</u> ----- -----.
<p>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 략) 5. <u>그 밖의 수입금</u> 	<p>제3조(기금의 재원)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p><삭 제></p>

<신 설>

<신 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대여
- 3.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용되는 비용
 -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업(자활계정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정한다)

6.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2. “영” 제26조의4 제8호의 사업이란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자활사업·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⑤ (생략)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 2.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정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

- 1. 기금재무관: -----
- 2. 기금출납공무원: -----

②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

-----.

제16조(이차보전) ① -----
----- 금융회사 -----
-----.

② -----

----- 금융회사 -----.

제안이유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 일치 및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재원 조성 방법 및 기금의 용도 등 기준이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법령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함 (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 상위법령의 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변경함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 “제3조”
- 3.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통일되게 정비함 (제3조)
 - 조례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6.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 7.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 4.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통일되게 정비함 (제5조제1항)
 -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2. “영” 제26조의4 제8호의 사업이란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상위법령에 표기된 용어에 맞게 수정함 (제2조, 제7조)
 - 기금운용관 → 기금재무관
 -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공무원
 - 금융기관 → 금융회사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98호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을 “같은 법” 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 을 “「도로명주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으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 칙」 별지 제14호서식” 으로 한다.

제1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4조” 를 “법 제4조제2항”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 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 로, “다음” 을 “영 제15조제3항 또는 다음” 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10일” 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을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촉진” 을 “사용 촉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생활화” 를 각각 “사용”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u>같은법 시행령</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u> ----- ----- -----.</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u>같은법 시행령</u>(이하 “령”이라 한다), <u>같은법 시행규칙</u>(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삭 제></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p>	<p>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 ----- ----- ----- ----- ----- -----</p>

번호판의 재교부시기 등을 안내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 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목개정 2010.08.18.>.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생략)

②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 의무) -----

-----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2항-----

-----.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이

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생략)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추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

----- 영 제15조제3항 또는

다음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23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①----- 사

용 촉진-----

-----.

1. 2. (현행과 같음)

3. -----

----- 사용 -----

4. -----

<p><u>생활화</u>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p> <p>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u>위원장이</u> 호선한다.</p> <p>③ (생 략)</p>	<p><u>사용</u> ----- -----</p> <p>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 과 같음)</p> <p>②----- -----</p> <p>-</p> <p>③ (현행과 같음)</p>
---	--

제안이유

1.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
2.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근거조항과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

주요내용

1. 용어가 모호하여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문 정비
 - 가. 도로명의 사용 의무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11조)
 - 나.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영 제15조제3항 또는’ 을 추가하여 조문을 정비함.(제16조제1항)
 - 다. 광고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기준 및 사유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 정비(제20조제1항)
 - 10일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0일
 - 라. 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제24조제2항)
 - 위원장이 → 삭제
2.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함.(제23조제1항)
 - 생활화 시책 추진 → 사용 촉진
 - 생활화촉진을 → 사용 촉진을
 - 생활화 → 사용
3.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제2조, 제20조제3항)
4.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함.(제15조): 법 제4조 => 법 제4조제2항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같은법 → 같은 법(제1조)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 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99호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이하 “자가발전 모노레일”이라 한다)의 위치는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290-84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 모노레일”이란 모노레일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휴무일”이란 자가발전 모노레일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4조(승차기준) 자가발전 모노레일 승차인원은 한 대당 2명 이내 이다. 다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이 승차할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이 동승하여야 한다.

제5조(운행시간) ①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월01일 ~ 10월31일: 09:00 ~ 18:00까지
2. 11월01일 ~ 다음 해 3월31일: 09:30 ~ 17:00까지

②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운행시간을 단축·연장하여 운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6조(휴무일)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장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이용

제7조(이용료) ①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 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당회차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 1. 국빈·외국인사절단 및 수행자
- 2. 공무수행 또는 자가발전 모노레일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이용당일 지정회차 이용 시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 1. 정선군 주민
- 2. 폐광지역(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 주민
- 3.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 중 자체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 2.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행 상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 할 경우
-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발전 모노레일을 사용할 수 없어 운영을 중단할 경우

제11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가발전 모노레일 및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승차 및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 3.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4. 그 밖에 시설물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4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및 이용제한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위탁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등은 위탁 계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행위의 금지)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1.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 할 때
- 2.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할 때

제4장 보칙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 등은 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가발전 모노레일 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금표	비 고
	일반	
2인승(1대)	10,000	

[별표 2]

자가발전 모노레일 감면(할인) 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요금표	비 고
	일반	
2인승(1대)	7,000	

※ 정선군·삼척시·태백시·영월군·보령시·화순군·문경시 주민:
반드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 폐광지역관광자원화(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선군 자가발전 모노레일”에 대해서 「관광진흥법」 제67조에 의한 시설이용료 징수 등 자가발전 모노레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이용료 규정(제7조)
 - 자가발전 모노레일 이용료는 1대당(2인승) 10,000원
- 2. 이용료 감면 (제9조)
 - 정선군민, 폐광지역(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주민은 이용료의 30% 감면
- 3. 위탁운영 (제15조)
 - 군수는 자가발전 모노레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
- 4. 행위의 금지 (제17조)
 - 수탁 재산의 목적 외 사용
 - 제3자에게 재산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 허용
 -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00호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7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7조제4항에 따라</u> ----- ----- ----- -----.

제안이유

법제처 협업과제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로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개정함. (제1조)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01호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운용조례” 를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 지보상특별회계” 를 “제126조에 의한 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 지보상 특별회계”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건축과” 를 “도시계획 담당부서” 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재원)” 을 “(세입)”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제5조의 제목 “(용도)” 를 “(세출)”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4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따르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 보상 특별회계 운용조례</u>	<u>정선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용 조례</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 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 - 제126조에 의한 정선군장기미

하여 정 선군장기미집행군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 용한다.

②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건축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 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연도에 따 른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 3. (생 략)
-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 권의 발행

5. (생 략)

제5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 한다.

-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 매수 보상금(지장물 및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 회계-----
-----.

② -----
----- 도시계 획 담당부서-----.

<삭 제>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차입금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 따른 -----

- 2. 제4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또는 -----

<p>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p> <p>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u>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u></p> <p>② (생략)</p> <p>제7조(준용) <u>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u></p>	<p>3. 그 밖에 -----</p> <p>-----</p> <p>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u>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채권 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따르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를 준용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준용) <u>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u></p>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여 입법 취지 및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목적규정에 맞는 형식으로 조문내용을 개정함 (제1조)
2.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 “제117조” 를 “제126조” 로 개정하고, 반복적인 개정을 피하고자 특별회계 관리부서를 “도시건축과” 에서 “도시계획 담당부서” 로 개정함 (제2조)
3. 상위법에서 명시된 일반적인 내용을 삭제함 (제3조)
4.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자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12조를 준용함 (제6조)
5.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함(제7조)

제240회 정선군의회(2017.11. 3.)에서 의결된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02호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약, 교통량 억제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함” 을 “정함” 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 를 “설치·관리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는 법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 를 각각 “관리자”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 를 “관리자”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기간” 을 “공공기관”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을 “법령” 으로, “동” 을 “그”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제1조(목적) ----- ----- ----- -----정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
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
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약, 교통량 억제를 통한 친환경
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
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
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자전거이용시설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 변화 및 이
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3. 관광자원과 연계한 자전거도
로의 개발
4. 읍·면별 연계성을 검토한
이용개선방안 개발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설치·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

②관리자-----

-----.

③관리자-----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관리자-----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 ①-----
----- 공공기관-----

<p>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 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군은 <u>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u>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관리 운영을 <u>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u> 위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u>법령</u>----- ----- ---- <u>그</u>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취지 및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입법취지를 명료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변경함 (제1조)
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명시된 중복내용을 삭제함 (제5조)
3. 중복된 내용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함 (제7조 ~ 제19조)

규 칙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91호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정선군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사항) 제안사항은 정선군에서 관장하는 시책 또는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개선을 위해 국민 또는 공무원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접수 할 수 있다.

제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접수된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제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

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택제안 실시 불가사유서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받은 기획감사실장은 실시 부서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실시불가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실시의 보류 또는 채택제안 실시 계획서의 수정·보안을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제안 심사 위원회) ① 군수는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제안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 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 3. 정선군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창안 등급 결정)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위원이 별표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③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심사제안건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은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되는 제안으로 한다.

제9조(시상 등)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 군수 표창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 1. 금상 : 하나의 제안 당 100만원
- 2. 은상 : 하나의 제안 당 70만원
- 3. 동상 : 하나의 제안 당 50만원
- 4. 장려상 : 하나의 제안 당 30만원

② 군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부상금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정선군민제안조례 폐지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제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에 대한 의견서	
제안제목	
실시가능성에 대한 의견	
창의성에 대한 의견	
법적타당성에 관한의견	
적용범위에 대한 의견	
계속성에 관한 의견	
기타의견 (효율성 및 효과성)	
채택여부	채택() 불채택()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계획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표1]

심의위원 심사표

제 안 제 목							
심사항목	심사 기준	배점 기준					득점
실시가능성 (30)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30	24	18	12	6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	다소있다	약간있다	
창의성 (20)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 인가?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효율성 및 효과성 (20)	· 행정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 및 파급 효과의 정도는?	20	16	12	8	4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적용범위 (15)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 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 자가 많은가?	15	12	9	6	3	
		전체 행정기관	다수 행정기관	일부 행정기관	일부 소속기관	일부 해당부서	
계속성 (15)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15	12	9	6	3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 기타 의견 -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2]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기준

점수	등급	비고
96점 이상	금상	
86 ~ 95점	은상	
76 ~ 85점	동상	
70 ~ 75점	장려상	
70점 미만	등급 부여하지 않음	

개정이유

「정선군민제안조례」 및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등 군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으로 각각 운영하여 온 제안 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제명변경
 - 정선군 공무원 제안 규칙 → 정선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2. 규칙의 목적, 제안사항을 규정함(제1조~제2조)
3. 제안의 접수기간, 제안의 채택 결정과 실시방법을 규정함(제3조~제5조)
4.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및 기능을 규정함(제6조)
5.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및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시상기준을 마련함(제7조~제9조)
6. 「정선군민제안조례시행규칙」 폐지(부칙 제2)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92호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 칭			구 역		
정선읍	봉양 1리	제 1반	봉양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봉양 2리	제 1반	제 1반	봉양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봉양 3리	제 1반	제 1반	봉양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봉양 3리	제 6반	봉양 3리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봉양 4리	제 1반	봉양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봉양 5리	제 1반	봉양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봉양 6리	제 1반	봉양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봉양 7리	제 1반	종전 봉양 7리 제 1반, 제 2반	
"	제 2반	종전 " 제 3반	
"	제 3반	종전 " 제 4반	
"	제 4반	종전 " 제 5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봉양 8리	제 1반	봉양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봉양 9리	제 1반	제 1반	봉양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봉양 10리	제 1반	제 1반	봉양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1리	제 1반	제 1반	종전 북실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신설)	종전	"	제 1반(북실마루아파트 101동 1~3호 라인)	
	"	제 9반(신설)	종전	"	제 1반(북실마루아파트 101동 4~7호 라인)	
	"	제 10반(신설)	종전	"	제 1반(북실마루아파트 102동 1~4호 라인)	
북실 2리	제 1반	제 1반	북실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북실 3리	제 1반	북실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실 4리	제 1반	북실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북실 5리	제 1반	북실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덕송 1리	제 1반	덕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덕송 2리	제 1반	덕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애산 1리	제 1반	애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애산 2리	제 1반	애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애산 2리 제 4반	애산 2리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신설)	종전 " 제 1반(아리채 101동 201, 203~204,301~604 102동 201~602)	
	" 제 13반(신설)	종전 " 제 1반(아리채 102동 203~604, 103동 201~602)	
	애산 3리 제 1반	애산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애산 4리 제 1반	애산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애산 5리 제 1반	애산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신월 1리 제 1반	신월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신월 2리 제 1반	신월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덕 우 리 제 1반	덕 우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여 탄 리 제 1반	여 탄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회동 1리	제 1반	회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회동 2리	제 1반	회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용탄 1리	제 1반	용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용탄 2리	제 1반	용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용탄 3리	제 1반	용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광하 1리	제 1반	광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광하 2리	제 1반	광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정선읍	광하 2리	제 4반	광하 2리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굴 암 리	제 1반	굴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가 수 리	제 1반	가 수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종전	" 제 4반, 제5반	
	"	제 5반	종전	" 제 6반, 제7반	
	고한읍	고한 1리	제 1반	고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고한 2리		제 1반	고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3리		제 1반	고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4리		제 1반	고한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고한 5리		제 1반	고한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고한읍	고한 5리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6리	제 1반	고한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고한 7리	제 1반	고한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8리	제 1반	고한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고한 9리	제 1반	고한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0리	제 1반	고한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고한읍	고한 11리	제 1반	고한1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고한 12리	제 1반	고한1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3리	제 1반	고한1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고한 14리	제 1반	고한1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고한 15리	제 1반	고한1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16리	제 1반	고한1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한 17리	제 1반	고한1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고한읍	고한 17리	제 4반	고한17리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고한 18리	제 1반	고한1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고한 19리	제 1반	고한1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고한 20리	제 1반	고한2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사북읍	직전리	제 1반	직전리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사북 1리		제 1반	사북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사북읍	사북 1리 제 5반	사북 1리 제 5반
	" 제 6반	" 제 6반(대림아파트 가동)
	" 제 7반	" 제 7반(대림아파트 나동)
	" 제 8반	" 제 8반(하이랜드빌리지 5동)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영동아파트 3동~4동)
	" 제 11반	" 제 11반
사북 2리	제 1반	사북 2리 제 1반(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1호~505호)
	" 제 2반	" 제 2반(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101호~505호)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 제 16반	" 제 16반(정선군임대아파트가동106호~510호)
	" 제 17반	" 제 17반(정선군임대아파트나동106호~510호)
사북 3리	제 1반	사북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명 칭			구 역		
사북읍	사북 4리	제 1반	사북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사북 5리	제 1반	사북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	제 13반	"	제 13반	
	"	제 14반	"	제 14반	
	"	제 15반	"	제 15반	
"	제 16반	"	제 16반		
"	제 17반	"	제 17반		
"	제 18반	"	제 18반		
사북 6리	제 1반		사북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사북 7리	제 1반		사북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사북읍	사북 7리	제 7반	사북 7리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사북 8리	제 1반	사북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사북 9리	제 1반	사북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	제 12반	"	제 12반	
	사북 10리	제 1반	사북10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사북 11리	제 1반	사북1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사북 12리	제 1반	사북12리	제 1반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1동201호~1503호)	
"	제 2반	"	제 2반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2동201호~1004호)	
"	제 3반	"	제 3반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3동101호~1403호)	
"	제 4반	"	제 4반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5동201호~902호)	
"	제 5반	"	제 5반	(정선산수빌임대아파트106동201호~1502호)	

명 칭			구 역		
신동읍	예미 1리	제 1반	예미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2리	제 1반	예미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예미 3리	제 1반	예미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예미 4리	제 1반	종전 예미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신설)	종전	" 제 1반(여미솔아파트 101동)		
"	제 8반(신설)	종전	" 제 1반(여미솔아파트 102동)		
예미 5리	제 1반	예미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예미 6리	제 1반	예미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신동읍	예미 7리	제 1반	예미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천 포 리	제 1반	천 포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1리	제 1반	조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조동 2리	제 1반	조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3리	제 1반	조동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조동 4리	제 1반	조동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조동 5리	제 1반	조동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신동읍	조동 6리	제 1반	조동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조동 7리	제 1반	조동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조동 8리	제 1반	조동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조동 9리	제 1반	조동 9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방제 1리	제 1반	방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방제 2리	제 1반	방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명 칭		구 역	
신동읍	가 사 리	제 1반	가 사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고성 1리	제 1반	고성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고성 2리	제 1반	고성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덕 천 리	제 1반	덕 천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운치 1리	제 1반	운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운치 2리	제 1반	운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운치 3리	제 1반	운치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면	화암 1리	제 1반	화암 1리 제 1반
"	"	제 2반	" 제 2반
"	"	제 3반	" 제 3반
"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화암면	화암 1리	제 5반	화암 1리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화암 2리	제 1반	화암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 3리	제 1반	화암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화암 4리	제 1반	화암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석곡 1리	제 1반	제 1반	석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석곡 2리	제 1반	제 1반	석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북 동 리	제 1반	제 1반	북 동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몰운 1리	제 1반	제 1반	몰운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몰운 2리	제 1반	제 1반	몰운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건 천 리	제 1반	제 1반	건 천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호 촌 리	제 1반	제 1반	호 촌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화암면	호 촌 리	제 3반	호 촌 리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백전 1리	제 1반	백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백전 2리	제 1반	백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남 면	문곡 1리	제 1반	문곡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		제 11반	"	제 11반		
문곡 2리		제 1반	문곡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곡 3리		제 1반	문곡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무릉 1리		제 1반	무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무릉 2리	제 1반	무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남 면	무릉 2리 제 3반	무릉 2리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무릉 3리 제 1반	무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종전 " 제 3반, 제 4반(그린빌라 구역)	
	" 제 4반	종전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무릉 4리 제 1반	무릉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 제 10반	" 제 10반		
무릉 5리 제 1반	무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 제 9반	" 제 9반		
유평 1리 제 1반	유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유평 2리 제 1반	유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명 칭		구 역	
남 면	낙동 1리	제 1반	낙동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동 2리	제 1반	낙동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낙동 3리	제 1반	낙동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광덕 1리	제 1반	광덕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광덕 2리	제 1반	광덕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여량면	여량 1리	제 1반	여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여량 2리	제 1반	여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여량 3리	제 1반	여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여량 4리	제 1반	여량 4리 제 1반

명 칭			구 역		
여량면	여량 4리	제 2반	여량 4리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여량 5리	제 1반	여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유천 1리	제 1반	유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유천 2리	제 1반	유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유천 3리	제 1반	유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구절 1리	제 1반	구절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구절 2리	제 1반	구절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구절 3리	제 1반	구절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명 칭		구 역	
여량면	구절 3리	제 3반	구절 3리	제 3반
	고 양 리	제 1반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남 곡 리	제 1반	남 곡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 정 리	제 1반	봉 정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면	장열 1리	제 1반	장열 1리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장열 2리		제 1반	장열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북평 1리		제 1반	북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 2리		제 1반	북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북평 3리		제 1반	북평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명 칭			구 역		
북평면	북평 3리	제 5반	북평 3리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북평 4리	제 1반	북평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북평 5리	제 1반	북평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북평 6리	제 1반	북평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남평	남평 1리	제 1반	남평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	제 7반	"	제 7반	
	"	제 8반	"	제 8반	
남평	남평 2리	제 1반	남평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문곡리	문곡리	제 1반	문곡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나전	1리 제 1반	나전	1리 제 1반		

	명 칭		구 역		
북평면	나전 1리	제 2반	나전 1리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나전 2리	제 1반	나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숙암리	제 1반	숙암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임계면	가목리	제 1반	가목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도전 1리		제 1반	도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도전 2리		제 1반	도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직원 1리		제 1반	직원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직원 2리		제 1반	직원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 1리		제 1반	임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임계 2리		제 1반	임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 3리	제 1반	임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임계 4리	제 1반	임계 4리	제 1반		

명 칭		구 역
임계면	임계 4리 제 2반	임계 4리 제 2반
	송계 1리 제 1반	송계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송계 2리 제 1반	송계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송계 3리 제 1반	송계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4리 제 1반	송계 4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송계 5리 제 1반	송계 5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6리 제 1반	송계 6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송계 7리 제 1반	송계 7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송계 8리 제 1반	송계 8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산 1리 제 1반	봉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임계면	봉산 2리	제 1반	봉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봉산 3리	제 1반	봉산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천 1리	제 1반	낙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낙천 2리	제 1반	낙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낙천 3리	제 1반	낙천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용산 1리	제 1반	용산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용산 2리	제 1반	용산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래 1리	제 1반	문래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문래 2리	제 1반	문래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문래 3리	제 1반	문래 3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덕 암 리	제 1반	덕 암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	제 6반	"	제 6반		

명 칭			구 역		
임계면	고 양 리	제 1반	고 양 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	제 5반	"	제 5반	
	반천 1리	제 1반	반천 1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반천 2리	제 1반	반천 2리	제 1반	
	"	제 2반	"	제 2반	
	"	제 3반	"	제 3반	
	"	제 4반	"	제 4반	

개정이유

1.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 조정으로 반 신설 및 조정 필요
2. 행정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인구 격감지역 반 통폐합

주요내용

○ 조정사항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폐지			
합 계	959	7	3	-	증4	963	
정선읍	231	5	3		증2	233	
고한읍	113					113	
사북읍	119					119	
신동읍	130	2			증2	132	
화암면	49					49	
남 면	82					82	
여량면	65					65	
북평면	64					64	
임계면	106					106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93호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기금운용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부의 비치)	<u>기금운용관</u> 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조(장부의 비치)	<u>기금재무관</u>	-- ----- ----- -----.
제7조(대여금 관리)	<u>기금운용관</u> 은 기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상환 의무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금 관리)	<u>기금재무관</u>	-- ----- ----- -----.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용어 일치 및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재원 조성 방법 및 기금의 용도 등 기준이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표기된 용어에 맞게 수정함 (제2조, 제7조)
 - 기금운용관 → 기금재무관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11월 2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294호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두는 기준은 다음 각 호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

- 1. 식품접객업
 -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 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적용특례는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정선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영업신고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5조(수수료)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규칙 제57조및 별표 4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옥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일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특례(제3조 관련)

1. 영업장

- 가.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고, 축제(행사)장 및 도로 점용허가 받은 구역 또는 공사현장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 및 외부로 영업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영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 다. 구조물과 기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라.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 마. 영업장에는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2. 조리장

-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1일의 영업시간에 음식물 찌꺼기, 오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등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음식의 조리 및 가공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라.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기구·용기류에 대하여 살균·소독제만으로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바.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창문 등을 통한 자연 통풍가능)
- 사.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돗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실

-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제3조 관련)

1.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구조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 다.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수도물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나, 1일의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판매시설

-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이동판매대를 갖추어야 한다.
- 나.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화장실

- 가.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지정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이때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영향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과 같은 대지 내의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4. 상기 규정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4]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1. 원재료

- 가.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여야 하고,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 원료를 구입·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하였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 조리식품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며,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구용기

- 가.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나. 제도가공에 사용된 기구류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한다.

4. 개인위생관리

- 가.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나. 항상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질병이 있는 사람은 조리를 할 수 없다.

5. 주변환경

- 가. 뚜껑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수시로 처리하여야 한다.
-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식품접객업 등 조건부 영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전화번호		
	행사명(전통시장명)	계약(행사)기간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			
	영업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종류 영업 영업 영업 영업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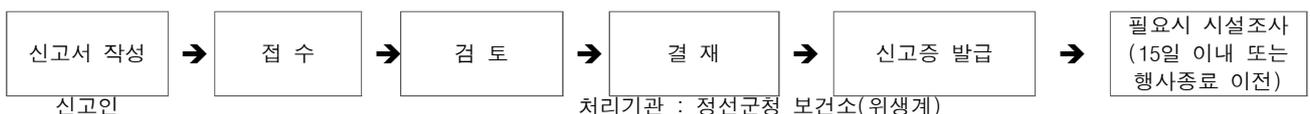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제출서류	1. 도로 등 점용 허가서 또는 축제(행사)에 참가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강진단결과서 1부 3. 위생교육 이수증 1부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 계약서류 1부.	수수료 28,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은 계약(행사)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폐업 됩니다.**
2. 계약(행사)기간 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영 업 신 고 증(조건부)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영 업 소 명 칭 :
- 소 재 지 :
- 영 업 기 간 :
- 영 업 의 종 류 :
- 조 건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m²]

【별지 제3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 업 소	종 류		업 소 명	
	소 재 지			
폐업일자		년 월 일		
폐업사유				
분실사유				
<p>「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제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margin-left: 50px;">정 선 군 수 귀하</p>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수수료 없음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재 지:

상기 업소의 영업주는 「정선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규정에 의한 정선군수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영업신고 조건을 준수하고, 건전한 영업질서(위법 및 퇴폐·변태 행위)유지에 협조 할 것이며,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 신고증을 정선군에 자진반납(폐업신고)하고, 영업기간 만료 후의 무신고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인 주 소 :
 성 명 : (서명)

정선군수 귀하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 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선군 현실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영업자에 대한 영업신고 요건 완화로 지역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 가. 식품접객업

-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 2)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3)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4)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행사)장내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 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허용

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 지역 중 정선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